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2. 11. 28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19. 김 수 진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2.11.28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수 진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,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4조)
- 2)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

- 3)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4) 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5)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10조)
- 6)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0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,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자살관련 시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아동·청소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자살예방 및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특히 최근 급증하는 우리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자살발생에 대응하여 자살 위험군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,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케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

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, 또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자살예방 대책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